

검 토 보 고 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홍창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 서강동 주민센터 부지 무상사용
허가를 위한 동의안

차재홍의원
외 10인
자치행정과

(2011. 10. 14)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명 금 길]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가. 제출일자 : 2011년 9월 30일
- 나. 제출자 : 차재홍 의원 외 10명

3. 의안 회부일자

2011년 10월 4일

4. 근거법령

- 가. 관광기본법 제6조(법률 제8741호, 2007.12.21)
- 나. 관광진흥법 제47조의 2(법률 제10556호, 2011.4.5)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

- 동 조례안은 우리 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며 관광산업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개요>

- 동 조례안은 전문 제4장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제2장에서는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지속적인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장에서는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에서는 관광산업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경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주요내용 >

- (1) 안 제3조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발전을 위하여 기본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기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 (2) 안 제5조에서는 마포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3) 안 제7조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4) 안 제11조에서는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5) 안 제12조부터 안제 21조까지는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14조에서는 기존에 행정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구성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정책자문위원회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였으며, 관광산업 활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관광정책자문위원회를 포함한 폭넓은 분야의 인사를 영입하여 위원회를 승격시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당연직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국장, 예산업무 소관국장 및 기타 필요한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관련 기관, 단체 등의 관광분야 전문가,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업무 소관팀장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 (6) 안 제15조에서는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함
- (7) 안 제1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
- (8) 부칙에서는 경과조치로 이미 구성되어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정책자문위원회’는 제12조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위원 및 인원으로 보며,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제15조의 임기를 적용 받는 것으로 보되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검토의견]

-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소득 증대효과 등 사회·문화·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되면서 국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들이 각종 관광관련 시설을 발굴 또는 개발하고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 우리 구도 서울 서북부의 관문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적 장점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그리고 한강수변·월드컵공원 등 풍부한 자연·생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광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 의회에서는 마포구 내 관광자원을 계발하여 벨트화하고 새로운 문화관광 컨텐츠를 개발하여 상품화하며, 국내·외 선진 문화·관광 도시를 벤치마킹하여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아이템을 제공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번에 제정된 동 조례안은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된 시의 적절한 조례로서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부서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어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